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총리령 제 2019- 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 ----- ----- ----- --.
1.~2.(삭제)	1.~2(삭제)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3. <u><삭 제></u>
4. 제6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4. <u><삭 제></u>
5.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5. <u><삭 제></u>
6. 제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6. <u><삭 제></u>
7. 제1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	7. <u><삭 제></u>

청 첨부서류 등: 2017년 1월 1일	
8. 제12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u>8. <삭 제></u>
9.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u>9. <삭 제></u>
10. 제1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u>10. <삭 제></u>
11. 제17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2017년 1월 1일	<u>11. <삭 제></u>
12. 제18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 2017년 1월 1일	<u>12. <삭 제></u>
13.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2017년 1월 1일	13.(현행과 같음)
14. 제22조에 따른 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2017년 1월 1일	<u>14. <삭 제></u>